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재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889

발의연월일: 2020. 8. 11.

발 의 자:인재근·김영진·송갑석

강선우 · 최혜영 · 홍성국

최종윤 · 송옥주 · 문진석

이탄희 · 이장섭 의원

(11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경우 6개월 이내 졸업 예정자에 대하여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고 있음. 그러나 의료기사등의경우에는 졸업 예정자의 국가시험 응시자격 부여에 대한 법적 근거가없이 국가시험 시행계획에서 해당 내용을 명시하고 있어 예측가능성이 떨어지고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대학등에서 취득하려는 면허에 상응하는 학문을 전공한 졸업 예정자가 의료기사등의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 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항 신설).

법률 제 호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으로서 6개월 이내에 졸업하여 해당 학위를 받을 것으로 예정된 사람은 제1항제1호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본다. 다만, 그 졸업예정시기에 졸업하고 해당 학위를 받아야 면허를 받을 수 있다.
- 1. 의료기사·안경사: 대학등에서 취득하려는 면허에 상응하는 보건 의료에 관한 학문을 전공한 사람
- 2.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인정기관의 보건의료정보관리사 교육과정 인증을 받은 대학등에서 보건의료정보 관련 학문을 전공하고 보건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교과목을 이수한 사람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면허) ① (생 략)	제4조(면허) ① (현행과 같음)
<u><신 설></u>	②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으로서 6개월 이내에 졸
	업하여 해당 학위를 받을 것으
	로 예정된 사람은 제1항제1호
	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본다.
	다만, 그 졸업예정시기에 졸업
	하고 해당 학위를 받아야 면허
	를 받을 수 있다.
	1. 의료기사·안경사: 대학등에
	서 취득하려는 면허에 상응하
	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문을
	전공한 사람
	2.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인정기
	관의 보건의료정보관리사 교
	육과정 인증을 받은 대학등에
	서 보건의료정보 관련 학문을
	전공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교과목을 이수한 사람
② (생 략)	③ (현행 제2항과 같음)